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061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 및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중임
- 나. 녹색산업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테크 관련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출자개요

- 출자규모 : 총 19억원('26년)

(단위 : 억원)

펀드명	'26년 市출자액 (총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4(20)	440억원	'24년~'32년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15(15)	20억원 이상	'26년~'34년

※ '2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다. 필 요 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 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3. 출자계획

가. 녹색기업 창업펀드

-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펀드 운용
 - 녹색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기업 성장지원
- 펀 드 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 출자금액 : 총 4억원('26년)
- 조성규모 : 440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292.5억원), 민간출자자 등(127.5억원)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4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나. 기후테크 펀드

○ 추진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 펀드 운영
-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초기기업 성장지원 육성 프로그램 도입

○ 펀드명 :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 출자금액 : 총 15억원('26년)

○ 조성목표 : 20억원 이상

- 서울시(15억원), 민간출자자(5억원 이상)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펀드 조성현황】

(’25.7월 말 기준)

펀드명	재원	조성액 (市출자액)	조성일	존속기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SBA 출연금	160억원 (SBA 20억원)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SBA 출연금	100억원 (SBA 20억원)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13.9.16.	12년 (3년투자, 9년회수)	청산중 (~25.9.15.)
녹색기업 창업펀드 4호	SBA 기금	145억원 (SBA 10억원)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회수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23.12.1.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	市 기후대응기금	440억원 (市 20억원)	'24.8.27.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기후테크 펀드 1호	市 기후대응기금	15억원 이상 (市 10억원)	결성 준비중(운용사 선정 '25.5)		
총 계		1,245억원(市·SBA 110억원) ※ 결성예정 불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경희 (☎ 2133-3586)